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01.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

1. 성폭력 및 성희롱 개념
 2. 폭력예방교육 필수과제 안내(온라인 교육)
-

[수업개요]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개요

건전한 성문화와 안전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문화개선과 안전한 사회 조성한다. 2. 성폭력,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 한다. 3. 가정 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	---

세부 주제

1. 성폭력 및 성희롱 개념
2.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진행방법

강의	토론	발표	활동/워크시트	기타
				○

- 온라인 교육 이수
- * 온라인 강의 미이수 시 성적이 Fail처리 될 수 있음.

활동

- 폭력예방교육 이수(사이버캠퍼스 온라인교육)

참고자료

01.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

1. 성폭력 및 성희롱 개념

가.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언행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은 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성희롱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과 행동의 범위는 넓고 다양하다. 아래와 같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동은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차별적인 비하 발언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생활에 관한 정보를 퍼뜨림
- 신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신체 특성 부위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행위
-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메신저, e-mail로 음란한 편지,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
-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학과, 동아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다. 대학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유형

- 1) 교수-학생간: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을 빌미로 성적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학업이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강의실이나 연구실 등에서 음담패설이나 성적언동을 통해 개인의 학업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경우,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등

- 2) **선후배(혹은 동기)간:** M.T나 술자리, 강의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고 옆에 앉게 하는 경우, 강제추행, 강간 등
- 3) **데이트 폭력:**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거나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위협, 인격모욕, 상대의 일상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등의 행위
- 4) **사이버성폭력:** 성적인 언어나 음란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인 대화의 강요, 개인의 성적인 정보를 사이버 상에 공개하는 행위
- 5) **스토킹:** 타인의 의사에 반해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방문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
- 6) **그 외에:** 셔틀버스,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 음란한 눈빛이나 고의적 신체접촉, 특정 신체 부위 노출 등

라. 성폭력 예방 수칙

- 1) 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도 나의 몸과 성적 행동에 대해 나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적극적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인 행동을 포함, 내 삶속에서 섹슈얼리티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실천 할 것인지 나 스스로 결정하고 추구할 권리
- 2) 자신의 느낌을 믿자.
성폭력의 일차적 판단기준은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이다.
- 3) 분명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라.
원치 않는 스킨십이나 성적 대화가 있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싫다고 의사를 밝혀야 한다.
- 4)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상대의 의사표현이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 5) 반드시 타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상대방이 자신과 동등한 권력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배려해야 한다.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요구나 강요에 의한 상황에서 동의했다면 진정한 동의가 아니다.

6) 술은 조절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마셔야 한다.

술에 취했다고 성폭력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주량만큼만 마시며, 상대에게 억지로 권유하지 말아야 한다. 술에 취한 학우가 있다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정하자.

자신의 성적 가치관, 행동의 범주를 고민하고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

마. 사이버 성폭력 예방 팁

- 1) 단체채팅방이나 개인채팅을 통해 누군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말 하지 않기
- 2) 성적인 모욕과 비하가 담긴 대화를 놀이나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 3) 단체채팅방에서 성적 동영상, 야한 농담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지 않기
- 4)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찍거나 SNS에 올리지 않기
- 5) 개인의 성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지 않기
- 6) 개인의 성적 영상, 사진,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방관하지 않기

바. 대처방법

•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처 1!2!3!

- (1) 자신의 안전에 대해 먼저 생각하기
- (2) 가능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사건정황을 기록해두고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3) 초기에 적극적으로 전문기관의 도움받기

• 긴급 상황에서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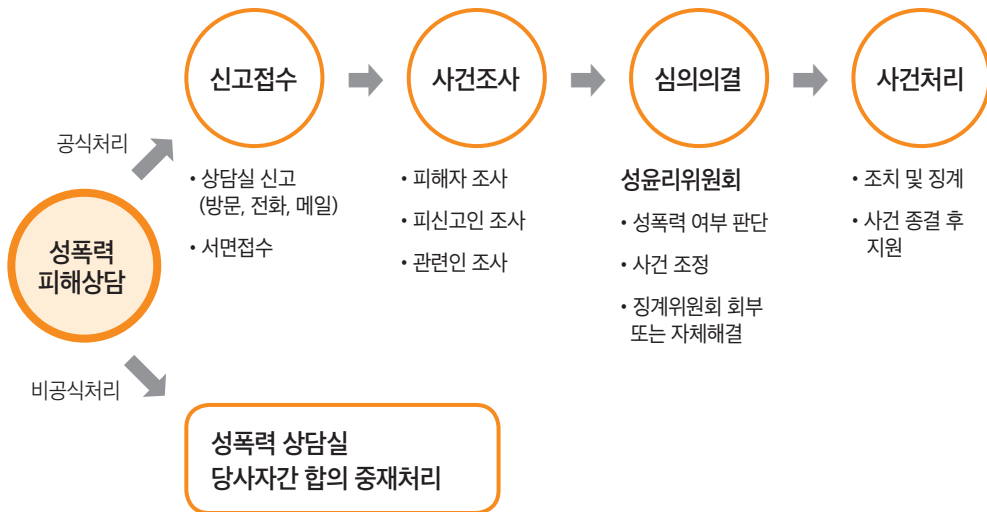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이나 여성 긴급전화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강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씻지 않은 채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치료와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받아놓고, 옷과 증거물을 세탁하지 않고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24시간 365일 운영)
- 112 범죄 신고 센터: 112 (폭력 및 범죄 상담)

•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기관 및 단체명	전화번호
서울 1366	1366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5
성남여성의전화	031-751-205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335-1858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02-3013-136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 교내 성폭력사건 처리 절차



• 가천인권센터 내 양성평등상담실

(1) 양성평등상담실에서 하는 일

- 성폭력 예방과 대처 및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 성희롱·성폭력 및 기타 성문제 관련 상담
- 성폭력 신고 접수(방문/전화/메일)
- 상담 희망 시 전화로 예약 후 방문

(2) 위치와 연락처

- 가천인권센터 글로벌 캠퍼스
 - 위치: 바이오나노대학 1층 가천인권센터
 - 연락처: 031-750-5965
 - 홈페이지: <https://naete.gachon.ac.kr/ko/counsel/student/intro>
- 가천인권센터 메디컬 캠퍼스
 - 위치: 보건과학대학 1층 가천인권센터
 - 연락처: 032-820-4034

2. 폭력예방교육 필수과제 안내(온라인 교육)

가. 시행목적 및 기대효과

- 인권교육,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의식 및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강의 개요

- 대상
 - 2015학년도~2019학년도 인성세미나 수강자(미이수자)
 - 2020학년도 인성세미나 수강자
- * 필수이수사항으로, 미이수 시 성적이 Fail처리 됨.
- 기간 : 2020.03.02.(월) ~ 2020.06.05.(금)
- 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140분)
- 교육내용 :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이수 : 강의 영상 6개를 모두 수강

다. 교육신청 및 수강방법

- 온라인 수업 수강 경로

